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57
----------	------

발의연월일 : 2020. 9. 25.

발의의원 : 김정태 의원, 최상국 의원

1. 제안이유

-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2019. 3.)에 따라 환경공무직의 신체적 재해방지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봉투의 무게를 제한하였고,
-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생활폐기물배출의 분리·보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으로 위임된 문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배출시 쓰레기봉투의 무게 제한 신설(안 제5조 제5항)
-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안 제12조의2)
- 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개정(안 제15조 제2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나. 관련 법령 및 현행 조례
 - 1)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
 -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배출되는 쓰레기봉투의 무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1. 100 l : 25kg 이하
2. 75 l : 19kg 이하
3. 50 l : 13kg 이하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처리시설로의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5.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보관시설 등은 수집·운반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 보관시설 등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폐형광등 및 그 밖의 것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한다.

라. 그 밖에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경계에서 외벽 사이의 거리가 60cm미만의 주택은 제외한다.

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mm×세로 400mm×높이 900mm 이상으로 1대 이상 설치

나.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mm×세로 400mm×높이 900mm 이상으로 3대 이상 설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배출되 는 쓰레기봉투의 무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u> 1. 100ℓ: 25kg 이하 2. 75ℓ: 19kg 이하 3. 50ℓ: 13kg 이하
<u><신 설></u>	<u>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 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군수 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 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u> <u>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 호 각 목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 반 입시간대와 처리시설로의 운 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제15조의2(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 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때에는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내구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집·운반장비에 적합한 기계적 상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 시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5.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의2(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 보관시설 등은 수집·운반장비에 적합한 기계식상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나. 보관시설 등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폐형광등 및 그 밖의 것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한다.

라. 그 밖에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경계에서 외벽 사이의 거리가 60cm미만의 주택은 제외한다.

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mm×세로 400mm×높이 900mm 이상으로 1대 이상 설치

나.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mm×

③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구분·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은 공동주택의 경우 종이류, 병류, 고철·캔류, 플라스틱류, 의류, 필름류,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한다.

세로 400mm×높이 900mm 이상으로 3대 이상 설치

<삭 제>

□ 폐기물관리법**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